

대전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가단116372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지웅

변 론 종 결 2022. 12. 22.

판 결 선 고 2023. 2. 2.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C과 피고 사이에 2019. 5. 8.에 체결된 주거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계약, 2019. 6. 24.에 체결된 상가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채권양도 통지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C은 'D'라는 공방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위 공방의 수강생인 원고에게 사실은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거나 '좋은 계가 있는데 갯돈을 넣으면 돈을 불러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7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sup>1)</sup> 263,257,320원을 송금받았다.

나. 또한 C은 원고가 현금이 부족할 경우 원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D에서 허위로 결제하는 속칭 카드깡의 방식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추가로 편취하였다.

다. C은 2020. 4. 10. 위 가., 나.항의 범행을 포함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9노2419 등), 이에 대한 C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C과 공모하였거나 C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2020. 6. 17.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15522호),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패소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C은 피고 명의로 E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F,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1천만 원에 임차하여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C이 사기범행으로 구속된 후 피고는 2019. 5. 8. 임대인인 E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차 관련 채무를 공제한 5,956,850원을 지급받았다.

바. C은 2017. 9. 5. H, I로부터 대전 유성구 J 지상 건물 중 상가 K호(이하 '이 사건 상가 K호'라 한다)를 보증금 2천만 원에 원고 명의로, 같은 건물 중 상가 L호(이하 '이 사건 상가 L호'라 하고, 위 두 상가를 한꺼번에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1천만 원에 피고 명의로 각 임차하였다. 피고는 2019. 6. 24. 임대인인 I로부터 이 사건 상가 L호의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철거비 등을 공제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2019. 5. 8.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2019. 6. 24. 이 사건 상가 L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각 양도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46483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5, 10, 1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당시 C은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거액의 사기범행으로 구속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와 피고는 2019. 6. 18. 이 사건 각 상가의 공동임대인인 H, I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협의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상가 K호의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L호의 보증금을 피고에게 각 반환하되, 연체차임, 철거비 등의 비용을 공제한다'는 것이었던 점, ③ 원고는 선행 소송에서 피고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2020. 1. 15.에 열린 변론기일에 그 회신이 도착하였음을 고지받았는데, 위 회신결과에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상가 L호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적어도 2020. 1. 15.에는 C이 사해의 의사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2020. 1. 15.부터 1년 이상 지난 2022. 5. 6.에야 제기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규정된 1년의 제척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4.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권

1) 피고는 C의 친구인 M의 딸인데, C에게 위 계좌를 빌려 주었다.